



제431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원 등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43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원 등	3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5.

3. 회부연월일 :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실제 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악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

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제7항).

Ⅲ. 검토의견

1.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원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무상보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매년 결정한 표준보육비용을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무상보육) ① ~ ③ (생략)	제34조(무상보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 ----- ----- ----- ----- -. <u>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⑦ -----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 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u>결정하여야</u> 한다. ⑧ (생략)	----- ----- ----- ----- ----- -----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34조¹⁾에서는 무상보육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보육 실시에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한편, 무상보육에 필요한 영유아보육료의 산정을 위한 근거로 현행법은 ‘표준보육비용’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적정 수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제공을 위한 예산 지원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있음.

- 구체적으로 ‘표준보육비용’²⁾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한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되,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2013년 1월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개정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에는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고, 2023년 6월에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조사의 중요성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 왔음.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

구성 항목	내 용
인건비	기본급, 수당, 퇴직금·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급·간식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교재비, 소모품)
시설비	시설유지비, 실외 교재교구비 등
관리운영비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등

* 자료: 교육부

[표준보육비용 결정 현황]

(기준: 월,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0세	1,017	1,167	1,209	1,253
1세	714	856	885	917
2세	580	703	727	753

* 주: 50인 규모, 12시간 기준

* 자료: 교육부

□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 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악화되거나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보육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려는 취지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액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면, 무상보육 원칙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 수준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법 제34조제4항은 무상보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무상보육 지원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사항일 것이므로 한정된 국가 예산의 배분에 있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재원 영유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및 인건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 증가를 고려하여 매년 영유아보육료를 인상해 온 바 있음.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천원, %)

연령 (반)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하반기(7~12월)		2026년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0세	499	570	514	599	540	629	567	660	584	693
1세	439	310	452	326	475	342	500	359	515	377
2세	364	210	375	221	394	232	414	244	426	256
증가율	(3.0)	(8.0)	(3.0)	(5.0)	(5.0)	(5.0)	(5.0)	(5.0)	(3.0)	(5.0)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2025년 상반기는 전년도와 동일함

* 자료: 교육부

-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는 기본보육(8시간)을 기준으로 한 단가로 ‘표준보육비용(12시간)’ 산출 기준과 차이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예산은 어린이집의 유형, 보육대상의 여건과 특성, 도서·벽지·농어촌지역³⁾ 등 취약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르며, 영유아보육료 외에도 연장보육료 지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표준보육비용과의 일률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유사 입법례로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의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3)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4. 2. 13., **2025. 11. 11.**> [시행일: **2026. 5. 12.**] 제36조

4) 보육 관련 예산 지원(예시)

- 연장보육료 지원: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구 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원)	3,000	2,000	1,000	3,000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1~2세반 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반을 개설(유지)한 어린이집
 - 지원금액 (정원 대비 부족 현원 1인당 지원단가): 월 377,000원(1세(1~2세반)), 월 256,000원(2세(2~3세반))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이하를 준수한 어린이집
 - 지원금액(0세반 아동 1인당 지원단가): 월 474,000원

아울러, 개정안 제34조제7항은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되,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도 현행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통해 매년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⁶⁾.

- 교육부는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보육료) 지원을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34조제4항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7

5)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 ⑤ (생략)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 ② ~ ③ (생략)

6) 교육부에 따르면, '25년 표준보육비용 결정·공표는 '26.3. 시행 예정으로 중앙보육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표준보육비용 결정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표할 예정임.

참고 1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개요 (자료: 교육부)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 ('26년 지원규모) 510천명, 3조 6,635억원 / 국비보조율 70.1%
- (지원방식)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보조금)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

- 부모의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문, 인터넷, 모바일, ARS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기관보육료)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만0~2세, 장애아 보육 시 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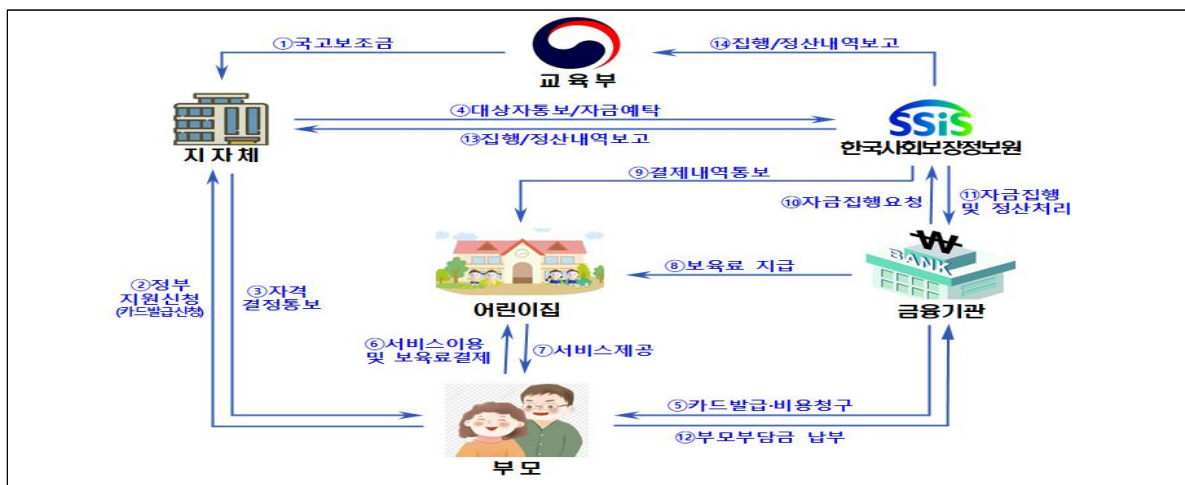
< '2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

(월 기준, 단위:천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계	1,277	892	682	1,376
부모보육료	584	515	426	634
기관보육료	693	377	256	742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집행절차 >



2.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추진배경)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 누리과정 : 3~5세 대상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 (지원 대상)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동안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3세 이상 유아를 둔 학부모
- (지원 항목) 유아교육비(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보육료
- (재원 부담) 「영유아특별회계법」 제3조에 의하여 교육세(유치원)와 국고(어린이집)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원
- (지원 단가) 보호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취학기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를 정하여 지원

< '26년도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단가(월) >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10만원	28만원	28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7만원	7만원
계	15만원	35만원	35만원

자료: 교육부